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7 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한규·한병도

황정아 · 김준혁 · 진성준

한정애 · 진선미 · 조승래

이용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,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 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,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해당하지않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·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 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 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94조).

법률 제 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4조 중 "리모델링주택조합"을 "주택조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4조(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	제94조(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
· 감독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	·감독)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	
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・사용자	
· 관리주체 · 입주자대표회의나	
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	주택조합
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	
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	
우에는 공사의 중지, 원상복구	
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	
명할 수 있다.	